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

검토보고서

2022. 11. 28.(월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

(전문위원 김동원)

검 토 보 고 서

(전문위원 김동원)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2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2-117호

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5.

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8.

3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기 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에 따른 제1조(목적)의 인용조문 정비
 - 제1조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'제18조의 3'을 '제18조의 7'로 변경
- 나. 제3조(기금의 용도)의 상위법령 조문의 재기재에 불과한 조항 수 정 및 삭제
 - '제3조제1호~제11호'를 '제3조제1호~제3호'로 변경
- '제3조제1호~제7호, 제9호~제10호' 삭제
- '제3조제8호, 제11호'는 유지하여 '제3조제2호, 제3호'로 올림

다. 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삭제

- 자활기금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 되는 기금으로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 제함
- 라. 제3조 수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정비 : 제6조(지원대상), 제8조 (사업자금 대여), 제10조(신용보증)
 - 제6조제5호: '제3조제11호'를 '제3조제3호'로 변경
 - 제8조제1항: '제3조제2호'를 '영 제26조의4제4호'로 변경
 - 제10조: '제3조제4호'를 '영 제26조의4제7호'로 변경
- 마. 제15조(시행규칙) 삭제
 - 상위법령 반복내용으로 불필요한 규정 삭제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18조의7(자활기금의 적립)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적립)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(기금의 존속기한)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 : 2022. 10. 6. ~ 10. 26. (제출된 의견 없음)
 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 - 3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 - 4) 제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2. 11. 3.)

6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기금 조례로서 2022. 11. 15. 마포 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-92호로 제출되어, 2022. 11.18.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.
- 개정 취지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반복, 중복,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 등의 재정비로 미비점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.
-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
 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(목적) 중 "「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"을 "「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4"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
 - 안 제3조(기금의 용도)의 상위 법령 조문 중 '제3조제1호~제11호'를 '제3조제1호~제3호'로 변경, '제3조제 1호~제7호, 제9호~제10호' 삭제, '제3조제8호, 제11호'는 유지 하여 '제3조제2호, 제3호'로 올려 불필요한 조항을 수정, 변경, 삭제 하였으며
 - 안 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의 자활기금은 「국민기초생활보 장법」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으로서 「지방자치 단체 기금 관리기본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
 - 안 제3조 수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제6조(지원대상) 제5호 중 '제3조제11호'를 '제3조제3호'로, 제8조(사업자금 대여) 제1항 중 '제3조제2호'를 '영 제26조의4제4호'로, 제10조(신용보증) 중 '제3조제 4호'를 '영 제26조의4제7호'로 변경 하였으며

- 안 제15조(시행규칙)는 상위법령 반복내용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.
- 본 조례는 상위법인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인용 조항 정비 및 기금 존속기한 조항 폐지와 관련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은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개정으로 법령 정비기준 및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 조례에 법 취지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히보완・반영하고 있어,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 - 아울러 타 관련 조례도 면밀히 살피어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 하여 일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.

7. 기타자료(비용추계서, 관계법규)

가. 비용추계서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는 상위법인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인용 조항 정비와 기금 존속기한 조항 폐지와 관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생활보장과 김수진
연 락 처	02-3153-6482

나. 관련 법규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- 제18조의7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. <개정 2019. 1. 15.>
 -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 <개정 2019. 1. 15.>
 -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 2. 1.]

[제18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<2021. 7. 27.>]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12. 30.>
 - 1. "수급권자"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.
 - 2. "수급자"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
 - 3. "수급품"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.
 - 4. "보장기관"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 - 5. "부양의무자"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다만,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.
 - 6. "최저보장수준"이란 국민의 소득·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 준을 말한다.
 - 7. "최저생계비"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.
 - 8. "개별가구"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.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9. "소득인정액"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 - 10. "차상위계층"이란 수급권자(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
 - 11. "기준 중위소득"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 위값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12. 2. 1.]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

제3조(차상위계층) 법 제2조제10호에서 "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"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5. 4. 20.]

[제3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<2015. 4. 20.>]

- 제26조의4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<개정 2012. 6. 12., 2015. 4. 20., 2022. 1. 28.>
 - 1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(補塡)
 - 2.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 - 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
 - 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
 - 5.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 - 6.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
 - 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 - 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
 - 나.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
 - 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 - 9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 - 10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

[전문개정 2011. 9. 8.]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<u>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· 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</u>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국민기</u>	제1조(목적) <u>「국민기</u>
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 및	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7
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	
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	
자활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	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	
다.	.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	제3조(기금의 용도)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용도에 사용한다.	
1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
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	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6조
<u>이에 대한 보전</u>	<u>의4 각 호의 용도</u>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	2. 법 제2조의제2호의 수급자
<u>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제1</u>	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에
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	속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
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	
<u>व</u>	
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	<u><삭 제></u>
<u>자산형성지원</u>	
<u>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</u>	<u><삭 제></u>
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	
5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	<u><삭 제></u>
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	
사업자금 대여	
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	<u><삭 제></u>

령 |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 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 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 성을 위한 비용

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| <삭 제>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 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
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 는 채무

나.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 자금 채무

8. 수급자 및 법 제7조제3항에 | <삭 제>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 람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9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| <삭 제> 등을 위한 비용

10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 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 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 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 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 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

<삭 제>

<u>11</u>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<u>3</u>. <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>

청장(이하 "구청장"<u>이라 한다</u>) 이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 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은 2023년 5월 30일까지로 한 다. 다만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- 1. ~ 4. (생 략)
- 5. <u>제3조제11호</u>에 따른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·기관·단 체

제8조(사업자금 대여) ① <u>제3조제</u> <u>2호</u>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<삭 제>

.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제3조제3호</u>
제8조(사업자금 대여) ① <u>영 제26</u>
조의4제4호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신용보증) <u>제3조제4호</u>에 제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 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.

╢10조(신용보증) <u>영 제</u>	26조의4제
<u>7ই</u>	
<u><삭 제></u>	

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.